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1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수경, 김재인, 전병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원, 박종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결 2021. 1. 13

판 결 선고 2021. 2. 3

주 문

1. 피고와 D사이에 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2/13지분에 관하여 2020.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 13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 5. 18. 접수 제 11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차전 6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 7. 21. ' D 은 원고에게 2, 149, 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 . 3.6. 당시 위 채무의 원리금은 8, 449, 458원[= 원금 2, 149, 600원 + 지연손해금 6, 299, 858원]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E 은 2020 . 3. 9. 사망하였고(이하 E을 '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피고,자녀인 F, C, G, D, H이 있다(상속지분 피고 3/13, 자녀들 : 각 2/13지분)

다. 위상속인들은 2020. 3. 6. 피고가 이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 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피고는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 . 5. 18. 접수 제115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앞서 D에 대하여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채권은 이 사건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 7. 26. 선고 2007 다 29119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 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13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D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사해 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중 2/13지분에 관하여,피고와 D사이의 이 사건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권은석

별지